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「국가계약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



1.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고,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6.7.21 ~ 8.31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오는 8월 21일(금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(안) 주요 내용

○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개정(안) 관련

- 인구감소지역*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5,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확대(안 제26조 관련)

* 경기 가평군·연천 등 89개 지역(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)

-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계약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등 추가(안 제76조 관련)

○ 「국가계약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 관련

-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(2개월) 및 과징금 산정기준(마련(안 [별표2], [별표3] 및 [별표4]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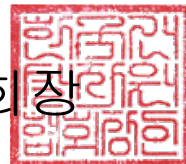
처분 사유	입찰참가자격 제한	과징금 산정기준	
		경미한 경우	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
▶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	2개월 (별표2 관련)	해당 용역 계약금액의 1% (별표3 관련)	해당 용역 계약금액의 3% (별표4 관련)
▶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			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- 붙임 : 1.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
 2. 「국가계약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7/24

팀장 권병문 부장 나철성 본부장 강한서 사무총장 조정환 회장 김동구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414 (2026.07.24) 접수

우 05636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(방이동,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)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1 전송 02-3476-8464 / hmihihi@koras.org / 공개